

02 9월 주요 이슈	08 농수축경제위원회
0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9 교육위원회
04 행정자치위원회	10 입법정보
05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2 사무처 소식 /
06 환경도시위원회	청탁금지법 Q & A
07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 의정 소식

Dreamjeju 21

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발행일 2017. 10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전화 064-741-2235 | 팩스 064-741-2219 | <http://www.council.jeju.kr>



노을 내려앉은 하얀 메밀밭

주황빛 노을이 그림처럼 내려앉은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메밀밭 모습.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메밀꽃이 눈꽃송이처럼 하얗게 피어나 아름답다.

“도민 여러분, 행복한 추석 보내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향을 찾으신 출향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가 이어집니다.
긴 시간이 주어진 만큼 가족과 함께하면서 화목하고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도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추석 때마다 마을에서는 각종 풍성한 문화잔치가 열립니다.
신명을 함께 나누며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긴 추석 연휴로 부담스러운 이웃들도 많습니다.
남들이 쉬는 때 근무해야 하는 소방관과 경찰, 군인 그리고 버스·택시기사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이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위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된 경제위기와 양극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추석 연휴는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과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함께 잘 사는 제주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돌담 너머로 떡차룻을 돌리고, 정남 안으로 채소를 나누던 미덕을 살려 이웃 간에 돈독한 정이 흐르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나눔의 미덕이 함께 하는 행복한 한가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향을 찾으신 출향민 여러분도 어머니의 품 속 같은 고향에서 푹 쉬시며 에너지를 충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도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위해 항상 ‘도민 우선의 의정’을 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 아오모리현의회, 제주에서 다시 움트는 우호 교류 도의회, 구마가이 유이치 의장 등 아오모리현 제주방문단 환영행사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와 일본 아오모리현의회가 제주에서 다시 만나 우정을 키웠다.

도의회는 세계자연유산등재 10주년 기념행사에 공식 초청된 일본 아오모리현 제주방문단을 환영하는 행사를 9월 10일 12시 메종글래드제주호텔 제이드 홀에서 개최했다.

환영행사에는 아오모리현의회 구마가이 유이치 의장, 아오모리현 사사키 이쿠오 부지사를 비롯한 아오모리현 관계자 20명과 윤춘광 부의장,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달 도의회가 일본 아오모리현을 방문, 아오모리현의회와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신관홍 의장이 세계자연유산등재 10주년 기념행사에 공식초청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신관홍 의장을 대신한 윤춘광 부의장은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좋은 추억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오모리현의회 의장 일행은 9월 11일 오전 10시 40분 도의회를 방문하여 의사당을 견학하고, 지난 8월 7일 체결한 양의회 간 우호 교류협정 정신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2018년 지방선거 각 정당의 아젠다는?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

2018년 지방선거가 열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의 선거 아젠다를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는 9월 12일 오후 3시 연동 소재 하워드존슨호텔에서 (사)제주지방자치학회(회장 김성준)와 공동으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개발 워크숍은 2개 세션으로 나누어 특별강연과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중국 베이징대학 사범대 이수봉 교수가 ‘중국의 행정리더십과 국가발전’이라는 주제로 중국의 인사 및 지도체제, 국정관리 이념, 집권과 분권의 조화, 대외개방과 국제화, 향후 국가발전 전망 등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제2세션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 아젠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바른정당은 최홍재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 자유한국당은 이동호 여의도연구원 제1부원장이 각 정당의 선거 아젠다를 미리 공개했다.

이어 토론에도 정당별 패널이 참여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용호 의원, 바른정당은 이선화 의원, 자유한국당은 유진의 의원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주가 지방분권을 선도하도록 법적 지위 헌법 반영 요청” 제354회 임시회 폐회, 제2차 추경예산안·조례안 등 처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54회 임시회가 9월 13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했다.

8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등을 처리하고 현장을 방문,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도가 제출한 5조656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출부분에서 14억7252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또 두 차례나 의결 보류되었던 탐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봉개동 매립장 사용연장 협약에 따른 봉개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된 안건은 총 50건으로 예산안 2건과 조례안 22건, 동의안 19건, 건의안 1건, 청원 2건, 기타 4건 등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창남 의원이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을 벌였고, 고태민, 홍경희, 이상봉 의원이 차례로 나서 지역 현안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윤춘광 부의장은 신관홍 의장을 대신해서 낭독한 폐회사에서 “이번 회기에서는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 각종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움직이는 의정도 펼쳤다.”고 말하고, 특히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많은 지적과 주문이 쏟아

져 나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축산폐수 불법 배출 사태에 따른 양돈 산업 체질개선,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불편 해소대책, 일회성 일자리 창출사업 지양,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등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 브랜드 홍보 예산 논란, 제주시 서부권 중학교 신설 관련 지적 등이 그렇다.”고 강조하며, “추경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지적에 유념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부의장은 또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지방분권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 즈음하여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안을 채택, 개헌특위와 각 정당과 국회에 전달하고자 한다.”면서, “우리 도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선도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와 각 정당,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다음 회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계획도 채택했다.”고 말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도정의 잘잘못을 바로잡는 도민 중심의 정책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 의원)는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월 11일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했다. 9월 12일에는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와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면 2017년도 제2회 도청·교육청 추경예산안이 지난 8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해 행정부지사 및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도민을 대표하는 자세로 활발한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경예산안을 보면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656억 원으로 기정액 4조 9,887억 원보다 1.5%인 769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조 1,920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1.6% 증액했고, 특별회계는 8,736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1.3% 증액 편성했다.

심사결과 세부사항을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 증·감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등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브랜드 홍보 10억 원 등

총 14억 7천2백만 원을 감액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억 6천만 등 총 14억 7천2백만 원을 증액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은 증감변동이 없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이번 추경심사에서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벌였으며, 추경 규모 769억 원 중 28.4%인 219억 원이 일자리가 대부분인 단기 고용형태의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편성되어 취업 고용 위기 대응에는 충분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중장기적인 일자리 대책을 주문하였다.

2017년도 제2회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보면 총 규모는 1조 834억 원으로 기정액 1조 537억보다 2.8% 증가한 296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증액분을 주 재원으로 급식시설 현대화 및 시설물 보수 관리 등 학교 현안 시설사업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채 상환에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한 바, 편중된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추경심사 과정에서 김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예결특별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향후 예산안 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해 건전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앞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취약계층 복지서비스 강화, 1차 산업 소득증대 지원, 시급한 민생현안의 해결 등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017년도 제2회 도청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

(단위: 백만 원)

구 분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		추경 예산안 (의결)
		증액	감액	
합 계	5,065,692	1,473	△1,473	5,065,692
일반회계	4,192,052	1,473	△1,473	4,192,052
특별회계	873,640	0	0	873,640
공기업특별회계	396,505	0	0	396,505
기타특별회계	477,135	0	0	477,135

< 2017년도 제2회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

(단위: 백만 원)

구 분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		추경 예산안 (의결)
		증액	감액	
교육비특별회계	1,083,443	-	-	1,083,443

2017년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 학술대회
예산결산심사 체계 개선 심사 역량 강화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제주대학교와 공동주최해 열린 2017년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예산결산심사 체계 개선 및 심사역량강화 방안 도출’을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특별 세션을 마련, 9월 2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2호관에서 진행했다.

특별 세션에서는 예산결산 심사 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제주도의 이월예산의 증가, 과소 세입추계를 비롯해 사회복지정책 체감도 저해요인, 지방소비세 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다.

재정분야 전문가가 다수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제주도의 사회복지정책, 세입, 예산집행 등 재정분야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다른 시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제주도에서는 한 번도 활용되지 못했던 결산심사의 시정요구제도, 상시 예산집행상황 모니터링 구축 방안이 당장 내년도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민기) 학술대회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정부에서의 지방재정”을 주제로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특별세션 이외에 행정안전부 송경주 교부세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행정안전부 특별세션, 일본 삿포로대 무사 카니에 교수가 “홋카이도의 와인(주세) 특구 시도와 카지노특구 도입에 대해” 주제 발표하는 일본지방재정학회 특별세션, “자치단체 일자리 예산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다루는 학술세션 등 재정분야 총 29개의 소주제로 진행됐다.



행정자치위원회

의회 차원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 마련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5일 오후 2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헌법적 지위확보방안 정책세미나」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지난 8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T/F)」 제1차 회의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참여정부의 특별자치도 구상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그 간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외국 사례 등을 통해 의회 관점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고충훈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의회 관점의 개헌안과 고도의 특별자치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9월 21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제주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때 의회와 도가 공동으로 제안할 건의문 작성에 있어 사전적 논의의 장이기도 하다.”며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강경식 의원과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과제, 헌법적 지위 확보 방향’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김대휘 제주도기자협회장, 권영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인택 제주특별자치도 전 경영기획실장,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행사를 주관하는 박원철 자치분권위원장은 “최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특위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설치한 특별자치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참여정부의 약속이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명시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 도와 공동으로 도민사회의 총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형 양성평등 조직 설계안, 완성도를 높인다

양성평등 추진체계 재설계를 위한 워킹그룹 제3차 워크숍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경희 의원은 지난 9월 13일 오후 4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양성평등 추진체계 재설계를 위한 워킹그룹 제3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제3차 워크숍에서는 약 9개월간 진행된 워킹그룹 위원들의 연구결과물을 공유하고, 보다 나은 결과물로 완성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오윤정·김준표 위원이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추진 조직체계 설계: 조직·소속 편제를 중심으로’를 발표했고, 심경수·오순금 위원이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한 인사제도: 개방형직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각 위원의 발표 후에는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김영순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정이은숙 제주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의 토론이 이어졌고, 도출된 의견을 최종 연구 성과

물에 반영할 계획이다.

워킹그룹을 주관하고 있는 홍경희 의원은 “성평등 및 성인지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의 근간은 제대로 된 조직설계에서 시작되는데, 본 워킹그룹의 연구결과물이 오늘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여 완성도를 보다 높이는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최종 연구결과물은 10~11월 중 의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일반 도민들이 참여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도민사회 내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워킹그룹 활동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워킹그룹을 공동주관하고 있는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도 “워킹그룹 운영에 따른 연구결과물에서 제안된 내용이 실제 도 정책 추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상임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주민자치 강화 ‘시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제주연구원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중 분권모델 완성을 선도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주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고충훈)는 9월 22일 오후 4시부터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연구원과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강화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국정과제 77) 분야의 세부과제인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을 선도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강화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 “크게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강화, 주민자치위원회 재원확보 방안,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확대,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한국생활자치연구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및 개선방안’과 관련해 “도민의 관심과 참여 등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주민참여예산제도 사후평가 및 보완, 지역공동체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

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고충훈 행정자치위원장은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중앙사무 이양 등 단체자치에 집중해왔던 측면이 있었다.”며, “도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가져온 권한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고, 도민들이 지역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즉, ‘주민자치’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주민자치분야 중 도민들이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주민자치위원회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이기 때문에 우선 이 분야에 주목을 했다.”며, “도민들 입장에서 더 이상 ‘초대된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민의(民意)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번 정책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주민자치 기능강화는 도민들의 정책체감도·효능감을 높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노력이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주민자치 기능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도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추첨제를 골자로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와 투명성과 전문성 지원 등이 강화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렴하여 향후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정포럼 연구모임 소속의원 도의회 방문

고충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9월 14일 오후 1시 30분 의장실 접견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한 경기도의회 의정포럼 연구모임 소속의원들을 접견하고, 지방자치 현안과 지역발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요 안건 처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의원)는 제354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를 개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심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임기를 조정하고자 고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위원회 임기를 조정하고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 등을 지정하고자 고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원안 가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에 대하여 사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청소년 직업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사회생활로 전환하는 시기에 직업재활교육 및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청소년 직업지도 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했다.



다른 시도 의료기관에서 제주의료 문제 ‘답’ 찾는다 안동병원 등 선진사례 벤치마킹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가 타시도 보건복지시설 선진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제주지역에 적합한 보건복지 정책개발을 위하여 9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국내 보건복지시설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여정은 제주의료원의 부채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65억 원에 달하는 등 채무에 대한 이자상환 비용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서귀포의료원 역시 올해 4월부터 8월 초까지 약 4개월 동안 응급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이에 대한 다른 시



도의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이번 벤치마킹은 양 의료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되어 도의회와 양 의료원장이 함께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데 의의가 있다.

21일에는 경상북도 안동병원을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안동병원은 의료법인 안동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으로 80년대 의료시설이 취약한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의료혜

택을 위해 설립되어 1990년대 경북권역응급의료센터(경상북도 안동시, 문경시, 봉화군,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로 지정된 이래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고, 권역의상센터와 여성센터, 전문요양센터를 함께 운영해오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6년 연속 전국 최상위 병원으로 선정되었다.

22일에는 대구의료원을 방문하여 시설을 견학하고 의료원 운영상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 노력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의료원은 1914년 설립된 후 100년 이상 지역대표 의료기관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 의료사업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방의료원으로서 전국 최초로 201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획득하여 의료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는 전국 293개 의료기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김용범 위원장은 “양 의료원의 운영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다른 시도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장,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위촉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안전정책분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행정안전부는 9월 20일 분과별 위원장 및 위원 등 각 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장관 추천을 통해 임기 1년(2017. 9. 25.~ 2018. 9. 24.)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김용범 위원장은 9월 25일 오전 11시 30분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촉장을 받았다.

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산하에 기획조정분과, 안전정책분과 등 8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의 기본정책·장단기 발전계획·분야별 행정개선 사항 등에 대한 자문과 새로운 정책 등을 건의하게 된다.

김부겸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서 “행정안전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문과 함께, 잘하고 있는 일에는 격려를 보내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정 어린 조언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도의회, 의료현안 문제 해결 방안 모색한다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현안업무보고



제주의료원의 노사문제와 서귀포의료원의 응급의료체계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의료현안 문제들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제주의료원의 노사문제와 서귀포의료원의 응급의료체계 등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폐회 중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9월 18일 오후 2시 제354회 폐회 중 회의를 열어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두 의료원장의 취임에 대한 포부 등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용범 위원장은 제주의료원의 복수노조 운영,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관련 문제, 정년문제, 정원 규정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제주의료원의 복수노조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간호사의 인사배치 문제, 그리고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제주의료원이 취업제한 기관은 아니지만, 서귀포의료원과 운영 및 지원 등이 유사하므로 지역의 정서상 취업제한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점, 현재 제주의료원의 다양한 노사문제, 적자문제 등을 봤을 때 총무과장은 1년 계약직이 아닌 정규

직으로 채용하여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정관변경을 통해서 정원 규모를 구체화 시킬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또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 유일의 응급의료시스템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서귀포 시민뿐 아니라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의료적 처치를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서귀포의 응급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지 못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올해 8월은 지난해 8월보다 464명이나 이용환자 수가 줄어들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서귀포 시민의 응급상황 발생 시에도 이용을 꺼렸던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며, 향후 의사들과 원장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환경도시위원회

제주 도시계획 정책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제주 도시계획의 과제 주제 난개발·과잉개발 억제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연구원과 함께 해답을 찾아 나섰다.

환경도시위원회는 9월 6일 오후 3시부터 '제주 도시계획의 과제'를 주제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연구원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제주도가 특별법에 따라 도시계획에 대한 많은 권한을 이양 받았으나, 이양받은 권한에 대해 적절한 활용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오히려 난개발, 과잉개발 등 도시계획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다.

또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원조치 또한 미흡한 실정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도시발전에 따른 체감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해 타 지자체에서 도입한 도시계획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제주지역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겠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세종시 전병창 상임기획단장이 맡아 '비도시지역 내 민간제한 사업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관광대학교 안균오 교수가 '도시계획제도 개선을 위한 다른 지역 사례 및 제주지역 적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선 제주국제대학교 건축학과 신석하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과장, 제주관광대학교 이성호 교수, 국토연구원 조판기 연구위원, 제주연구원 이성용 연구위원 등 5명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1년이 넘고 많은 권한을 이양받아온 상태에서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충분한 학습 기간을 거쳐 왔음에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 "지난 4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라는 제도를 소개하는 워크숍도 가졌고, 이번에는 제주의 미래, 도시계획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기 위해 도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그리고 제주는?

제주형 "도시 재생 뉴딜 정책" 주제로 토론회 개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응한 제주형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공동으로 9월 15일 오후 3시 일도1동 복지회관에서 '제주형 도시재생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나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의 부족,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 모델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어서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높이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 주민, 그리고 연구소 등의 역할과 과제를 살펴 지역 공동체와 역사 환경이 두루 숨 쉬는 제주형 도시재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자는 김주진 토지주택연구원 도시관리연구실장과 이승택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나섰으며, 토론자로선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두고, 이선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창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과장,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 이재우 목원대학교 교수, 제주연구원 엄상근 박사, 관덕정 광장 활성화를 위한 주민모임 고봉수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은 "도시 재생 뉴딜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이 어떤 정책이며, 우리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자리 잡아 나가야 할지 다 같이 고민하고 공부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도시재생을 위한 행정과 주민 그리고 재생센터, 제주연구원 그리고 우리 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봉개 태양광 발전 사업, 탐동 방파제 축조 동의안 통과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9월 8일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그동안 두 차례나 의결 보류되었던 탐동 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과 봉개동 매립장 사용연장 협약에 따른 봉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부대조건을 붙여 처리하였다.

이번 심사에서는 탐동 방파제 축조공사의 경우 그동안 계속 거론되었던 내측 수로 활용 방안에 대해 더욱 고민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봉개동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관련법에서 철거비용을 공탁하도록 한 만큼 그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부대조건을 붙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명만 의원(대표 발의)과 김경학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

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고 9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해서 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전거 보급의 촉진과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 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도지사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전기자전거 생태계 구축, 관련 산업 육성방안 등을 포함한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하면 사무를 위탁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업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최종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10월에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방안은?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에서는 9월 14일 15시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방안"이라는 주제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공원을 말하며, 현재 타 도시에서 민간특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형평성에 따른 특혜문제, 주변 지역과의 조화나 환경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지역사회의 갈등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토론회를 통해 제주가 앞으로 도시공원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민간특례를 어떻게 활용해서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구성원 간에 화합하여 추진될 수 있는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 윤은주 선임연구원(LH연구원)이 "도시공원 개발 행위 특례제도의 취지와 적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안종하 청주시 민간공원개발 TF팀장이 "청주시 도시공원 특례사업 추진현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했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제주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 민간특례 사업추진 전 도민사회에 도시공원 특례제도에 대한 설명과 공감대 필요할 것이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제주도가 도시공원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민간특례를 어떻게 활용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등 12건 심사

제354회 임시회에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이기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개정 등을 비롯하여 12건의 안전 안전심사와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사무」에 대한 1건의 보고가 있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은 31건의 신규사업과 32억 5,666만 3천원으로 작년 2회 추경예산 대비 39.1% 증액된 95억 4,260만 2천원이 증액되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였고, 상임위에서는 총 2개의 사업 80,520천원이 감액되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안전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제주도가 지난 8월 조례에 근거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가 아니라 별도의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오라관광단지

와 다른 개발사업과의 자본검증 주체가 달라지는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김희현 위원장은 “물론 자본검증 절차를 거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검증을 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법적 하자는 없는지 논란의 여지가 많다.”며 상임위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보류시켰다.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대중교통 개편에 따라 관광지 순환버스 노선 접거 및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 2017년 9월 8일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동광환승센터에서 순환버스를 직접 타서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과의 대화를 해본 결과, 공영관광지와 마을 위주의 순환으로 중산간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수월하고, 관광객들 역시 순환버스 하나로 쉽게 관광지에 접근해서 좋았다는 평을 받았으나, 중산간 지역은 순환버리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을 가야 할 경우는 모두 환승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노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제주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어떤 전략 필요한가?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공동 세미나 개최



제주의 문화콘텐츠산업을 진흥시키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그 방안을 찾는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와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국장 김홍두)은 공동으로 제주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전략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9월 21일 오후 3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정책세미나는 의회와 도가 공동으로 앞으로 설립될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성공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는 김준환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장이 ‘희소, 차별, 고품

격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오창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 ‘전남 문화콘텐츠산업 현황 및 육성전략’, 이병민 건국대 교수가 ‘타 시도 사업 현황 및 차별화 전략’에 대한 발표를 통해 향후 개원할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성공 방향성을 조인했다.

토론자로에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전정환 센터장, 제주ICT협회 오태현 전임회장, 제주대학교 김동진 교수, 도청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김홍두 국장이 참여하여 콘텐츠진흥원 설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그 외에도 문화산업 관계자가 참여해 제주 문화산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주의 옛길 운영 관리 방안 모색한다. ‘제주의 옛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워킹그룹’ 사례조사

제주시 원도심의 옛길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나섰다.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이 구성·운영 중인 가칭 ‘제주의 옛길 조성·관리를 위한 워킹그룹’은 9월 18일부터 이틀간 경기·서울 등지에서 선진사례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선진사례조사는 ‘경기옛길 조성 관리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과 역사적 옛길을 복원해 역사도심 재생을 꾀하고 있는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를 방문해 제주의 원도심 및 자연마을의 옛길을 자원화해 활용하는데 시사점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는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한양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갔던 역사적 길들을 발굴·조성해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는 ‘역사인문재생계획’을 통해 도심공간재생을 역사적 사실과 자원을 가지고 역사적 길을 통한 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하부계획으로 2015년 ‘역사도심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공간관리계획으로써 오래된 옛길의 특성을 보존하고 한옥 밀집지역의 환경 개선과 근현대 건

축자산 및 생활 유산을 지역재생의 촉매제로 활용하고 있다.

2016년에는 창덕궁 앞 4개의 길을 역사인문으로 재생해 개통했고, 정동길을 복원해 대한제국의 원공간을 관광자원으로 풀어냈다. 2017년에는 동대문 세운길을 재생해 9월 19일 개통했다.

워킹그룹은 경기문화재단 및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 부서장과의 면담을 통해 옛길 발굴과 관리 활용방안, 공간관리계획 등을 청취하고, 특히 서울시의 동대문 세운길을 개장 전 역사도심 재생과의 안내로 직접 걸으며 현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경기문화재단처럼 역사적으로는 과거 이형상 목사의 탐라순력길이라든가, 남사록에서 보이는 청은 김상헌의 순력을 재현한 자원 활용방안과 서울시처럼 도내 원도심 등 자연마을의 이동공간을 복원하여 자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최근 옛길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애로사항에 대해 서울시나 경기재단의 대처방안도 함께 사례를 통해 청취했다.

김희현 위원장은 “도내 재생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지역 옛길과 연계된 활용사례들이 늘고 있고, 무분별한 도로 개설



에 대한 반대의견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다운 옛 모습을 발굴해 문화자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조만간 제주옛길의 복원, 관리, 활용 방안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문화예술육성기금 합리적 운용 방안 찾는다 김동욱 의원, 제주문화예술재단 공동으로 라운드 테이블 개최



제주문화예술육성기금의 합리적 운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과 제주문화예술재단은 9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예술 공간 이아에서 문화예술분야 기금제도 개선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현재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근거로 설치된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은 2020년까지 300억 원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지만, 현실적(현 적립액 170억 원)으로 그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저금리 추세로 인해 적립기금의 이자 수입 활용도가 기

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에 있어서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자금으로 제한적인 상태이기도 하다.

반면 제주 문화예술 부분의 예술인 복지와 관련 시설 및 지역 내 청년예술인 발굴과 문화산업 확대 등을 위해 다양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문화예술분야의 기금 확보와 활용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 조성 중인 제주문화예술육성기금에 대해 서울문화재단 김해보 본부장, 인천문화재단 변순영 팀장, 한미회계법인 김성규 대표 등을 토론자로 초대하여 타 시도 사례 등을 통해 개선 과제 및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처리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의원)는 제354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항만 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등을 심사했다.

이번에 심사된 주요 안건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규정된 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한 사항이며, 조례제정을 통해 항만시설 관리의 효율성과 향후 지방공기업 설립 시 출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해석의 명확성 확보와 알기 쉽게 조례를 정비한 사항이며,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했다.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출연 동의안」은 창업기업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출연을 위해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창업 기업의 기업 활동을 보장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했다.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장 방문, 참가선수 격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354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8일 현장방문 일정으로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어음경기장을 방문해 참가선수들을 격려하고 관계자로부터 경기대회 운영현황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9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7개 경기장에서 열렸으며, 폴리메카닉스 등 50개 직종에 선수와 집행위원 등 2만 여 명이 참가했으며, 제주는 27개 직종 67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고용노동부와 제주도, 제주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제주도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해 지난 4일부터 8일간 제주에서 열린 기능경기대회에서는 경기도가 금메달 4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7개, 종합점수 1,622점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2~3위에는 대구와 서울이 각각 올랐다.

제주는 은메달 1개와 동메달 7개, 우수상 1개, 장려상 8개 등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했다. 순위는 종합 16위.

제주한라대학교에 다니는 최효원이 요리 직종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 제주 선수단 유일한 은메달이다.

한림공고 김성환·박강호·문주혁 등 3명은 통신망분배기술 직종에서 동메달을 차지했고, 같은 학교 고정협과 강원명이 육내제어와 배관 직종에서 각각 동메달을 추가했다.



또 뷰티고 강정아가 피부미용 직종 동메달, 현순옥씨가 의상디자인에서 동메달을 추가했고, 이기성씨는 도자기 직종에서 우수상을 타냈다.

요리 직종 한라대 이진호, 건축설계/CAD 직종 한림공고 신성범, 자동차정비 제주고 김호근, 정보기술 영주고 조용훈·고동민·서정민, 의상디자인 이희호(개인)·양희순(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제주는 값진 성과를 올렸다.

통신망분배기술 직종에서 제주는 한림공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4회 연속 메달 획득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또 육내제어와 배관 직종에서도 입상자를 배출한 한림공고는 통신망분배기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에서 기술 인재 육성에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피부미용 직종도 마찬가지다. 2014년에 제주 선수가 우수상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메달을 차지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의상디자인 직종도 지난 1990년 우수상 수상 이후 입상과 거리가 멀었지만, 올해 동메달 1개와 장려상 2개를 잇따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개최지 제주 선수단은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경용 의원, 대한뉴스 선정 '2017 TOP LEADERS 大賞' 수상



이경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 '대한뉴스'가 선정한 '2017 TOP LEADERS 大賞'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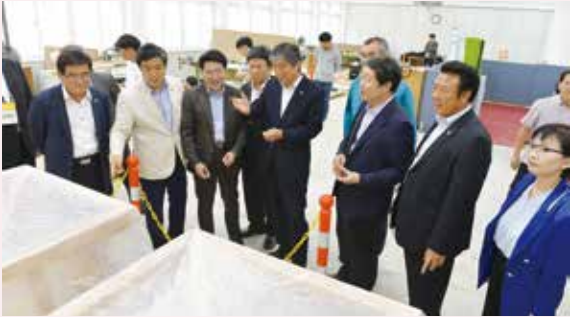
'2017 TOP LEADERS 大賞'은 창간 15주년을 맞은 일간신문 '대한뉴스'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가발전은 물론 국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국회의원 과 자치단체장, 광역 및 지방의원 등 각 분야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경용 의원은 선거공약 이행, 감골 등 1차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분야, 지역주민 민원 해소 및 갈등 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의정을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어 2017년 9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층 별실 2, 3, 4에서 진행되는 '2017 TOP LEADERS 大賞' 시상식에서 우수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다.

이경용 의원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의정, 꾸준한 의정 활동을 해온 성실 의정,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정을 통한 노력이 중앙에서 인정받아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은 수상이라고 생각한다."며, "2017 TOP LEADERS 大賞' 수상이 더 열심히, 더 잘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더욱더 몸을 낮추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교육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심의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지난 9월 7일 제 35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3건의 조례안과 대정중학교 수영장 증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였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다.

먼저 부공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청렴하고 책임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익신고 활성화와 청렴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성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운영의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보다 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으로 질 좋은 학교 급식 운영이 기대된다. 다만,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적격업체의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및 불가피하게 예외로 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 규칙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윤춘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용역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 제정으로 학교 용역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고용유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9월 7일 교육위원회는 제주에서 최초로 전국기능경기대회(2017.9.4~9.11. 8일간)가 개최됨에 따라 한림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대회 운영 현황 및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가졌으며 도내 출전선수과 지도교사 및 경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17 제2회 교육비 추경예산안 검토, 원안 가결



9월 8일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 보통교부금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급식시설 현대화 및 시설물 보수관리 등 학교현안 시설사업, 국가시책사업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채 상환에 우선 투입하고자 편성되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6억 원이 증가한 1조83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가 증액되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고 이에 대해 교육청은 공무원 증원, 교육공무직원 채용이 상반기에 이루어졌고, 이번 추경을 통한 추가 고용은 시기적·제도적으로 한계가 있

며, 학교교육환경시설개선과 안전관련 예산 등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시설의 안전강화 그리고 간접적인 고용확대 효과를 일정부분 기대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예산 편성 시마다 시설사업에 대한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의 적기 집행과 명시이월사업 최소화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아울러 「IB 교육과정평가방법 적용 방안 연구용역 사업」의 경우 우리의 교육과정과 달라서 IB 교육과정을 공립학교에 공식 도입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으므로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평가방법이 무엇인지와 꼭 필요하다면 도내 국제학교의 교육과정 평가방법 벤치마킹을 통해서 목적 달성이 어려운지 등 사업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본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근본적인 검토를 주문하였다.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방안 모색 위해 머리 맞대다

교육발전연구회 정책토론회 개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교육발전연구회(회장 김광수 교육의원·제주시 일도1·이도1·2·삼도1·2·용담1·2·건입·오라동)는 9월 15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화실에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안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희순 제주북초 교장이 '안전한 등굣길 1km 걷기 추진사례', 고명희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가 '청소년 유해업소로부터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발표가 진행됐으며, 오승식 제주시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장, 이진석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장, 김봉석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팀장, 김기용 제주시 위생관리과장, 김이승현 올바른교육환경 개

한 통학환경 조성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 좌장은 박정환 제주대 교수(교육학과)가 맡았다.

토론회는 각 토론자의 지정토론과 함께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김이승현 대표와 고명희 대표 등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자들은 학교 통학로 주변의 유해업소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광수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으로 도교육청의 등굣길 1km 걷기 사업에 대해 심리·정서·물리적 안전 통학로 만들기를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은 학교의 의지만 갖고 이뤄지지 않는다. 학교를 둘러싼 지역공동체, 경찰, 행정 등을 비롯해 도교육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 학생 취업률 증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된다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태순 의원〉



〈윤춘광 부의장〉



〈부공남 교육의원〉

장애 학생의 취업률 증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순·윤춘광·부공남 의원은 9월 15일 제주지역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 학생의 취업률을 증가하여 직업 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고태순 의원은 "2016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은 21.6%로 전국 취업률 24.6%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주지역의 경우 산업분포가 1차 산업과 3차 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 학생들이 졸업 후 서비스업에 취업해야 하는데, 서비스 업종 특성상 장애 학생들이 적응하기 어려움이 있어 산업체 분석 및 사업체 발굴을 강화하여 다양한 직종 발굴을 위해 많은 노력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 증가를 위하여 우선 도교육청이 특수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하고,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업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또 "평소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해 오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장애 학생들의 취업률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입법정보



법령 제·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20만원, 2회 위반 시 3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등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8260호, 2017.9.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등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342호, 2016. 12. 2. 공포, 2017. 9. 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20만원, 2회 위반 시 3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등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별표 6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6 제2호더목부터 터목까지를 각각 머목부터 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더목 및 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더.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6호의2	20	30	50
러.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6호의2	50	50	50

별표 6 제2호 비고 중 “어목 및 저목”을 “처목 및 커목”으로

입법예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처분과 관련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고 2017. 9.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개정이유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록을 제출하는 경우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정비하고, 이 법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처분과 관련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 결격사유 정비(안 제6조제1항제5호)

정신질환자 등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로 허가 등이 취소된 자의 경우에 행위능력이 회복되었음에 불구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허가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며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정신질환자 등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로 업허가 등이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

나.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자료보존 의무(안 제8조제3항)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에 대하여 재심사 신청 시 첨부한 자료를 2년간 보존하도록 함

다. 의료기기 행정처분 정비 등(안 제36조제1항, 제2항)

1) 추적관리대상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록을 작성 및 그 기록을 보존·제출한 경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현행법에 따르면 재심사·재평가 관련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보건에 위해 우려 등이 있어 의료기기의 원재료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변경명령의 대상을 확대함

라. 위반사실 공표제도 도입(안 제38조의2)

이 법의 위반행위로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그 처분내용, 처분 대상자 등 처분과 관련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령 해석

경과조치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민간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취수허가량을 늘리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 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 및 부칙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7-0316, 2017.9.13.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예시〉

「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되어 2006. 7. 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구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312조제1항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의 제조·판매를 위한 구 제주특별법 제3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할 수 없고, 구 제주특별법 부칙 제33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 등을 받은 자는 구 제주특별법 제312조에 따른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제주특별법 부칙 제33조 본문의 경과조치에 따라 같은 법 제3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로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는 자(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이하 같음)가 그와 같이 의제될 당시의 취수허가량을 늘리기 위해 구 제주특별법 제312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도지사는 그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

*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구 제주특별법 부칙 제33조 본문의 경과조치에 따라 같은 법 제3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로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그와 같이 의제될 당시의 취수허가량을 늘리기 위해 구 제주특별법 제312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도지사는 그 변경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구 제주특별법 제312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제7조의2·제7조의3·제8조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9조의2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제주특별법 제31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이하 “도조례”라 함)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도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려는 경우(제1호) 등의 경우에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되,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제주특별법 제312조제5항에서는 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제주특별법 부칙 제33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 등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312조에 따른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제주특별법 제312조의 위임에 따라 2006. 4. 12. 도조례 제2585호로 제정되어 2006. 7. 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6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자 및 그 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중 취수량의 증량(제3호) 등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의결과 취수량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목) 등에 해당하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변경허가 시 그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취수량을 제한할 때에는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결과, 지하수위 관측자료, 지하수 이용량 조사자료, 지하수 수질 조사 및 검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제주특별법 부칙 제33조 본문의 경과조치에 따라 같은 법 제3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로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그와 같이 의제될 당시의 취수허가량을 늘리기 위해 구 제주특별법 제312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도지사는 그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까.

먼저,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특정대상에 대해서는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3. 10. 25. 회신 13-0433 해석례 참조), 구 제주특별법 부칙 제33조의 경과조치는 해당 법률의 시행일인 2006. 7. 1. 이후부터 같은 법 제312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가 금지됨으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기존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자의 영업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구 제주특별법 제312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6. 7. 1.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예외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부칙 제33조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제주특별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개발특별법령 등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1. 5. 12. 회신 11-0154 해석례 참조), 구 제주특별법 부칙 제33조는 해당 법률의 시행 당시 위와 같이 확정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범위에 한정하여 구 제주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을 예외적·잠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려는 취지일 뿐 기존에 확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까지 허용해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제주특별법 부칙 제33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같은 법 제312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가 같은 법 시행 이후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구 제주특별법에 따른 변경허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7. 8. 2. 회신 17-0368 해석례 및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281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제312조제3항에서는 섬지역의 특성상 상수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오염을 방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를 적정하게 보전·관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만일 구 제주특별법 부칙 제33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같은 법 제312조에 따른 허가가 의제된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아닌 자에 대해 그 의제 당시의 취수허가량을 늘리는 변경허가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제주특별법 부칙 제33조 본문의 경과조치에 따라 같은 법 제3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로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그와 같이 의제될 당시의 취수허가량을 늘리기 위해 구 제주특별법 제312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도지사는 그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추석연휴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당초 : 10.10.(화) → 변경 : 10.13.(금) －

- '17년 10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연장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임시공휴일(2일), 추석 연휴(3일~5일), 대체공휴일(6일)로 인해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 9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및 레저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10일인 신고납부기한을 13일로 연장한다.
-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는 약 55만 명의 사업자(법인·개인)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로 9월말일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담배소비세는 토요일(9월 30일) 및 임시공휴일 지정(10월 2일)에 따라 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10월초 장기간 휴일을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생후 6~59개월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작!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전국 생후 6~59개월(2012년 9월 1일~2017년 8월 31일 출생) 어린이 중 생애 처음 접종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9월 4일(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생애 처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거나, 지난 절기 첫 접종을 받았으나 1회만 접종 받은 어린이는 인플루엔자 유행 시작인 12월 이전 최소한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하여 9월 4일(월)부터 먼저 시작하게 된다.

생후 6~59개월 어린이

2017.9. 4.(월)~ 어린이 사업 대상자 중 2회 접종 대상자

2017.9.26.(화)~ 어린이 사업 대상자 중 1회 접종 대상자

~2018.4.30.(월) 위 대상자 중 미접종자 및 생후 6개월 도래 2회 접종 대상자

* 생후 6개월부터 접종이 가능하므로, 12월 이후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중 6개월에 도래하는 어린이는 가능한 빨리 접종을 완료해야 함

예방접종을 이전에 완료한 경험이 있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유행기간 동안 면역력 유지를 위하여 9월 26일(화)부터 시작해, 유행 시작인 12월 이전 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료접종을 제공하는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에서 9월 4일부터 확인 가능하며, 사전에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방문하도록 해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4·3 문제해결의 지혜를 현장에서 찾다

도의회 4·3특위, 비극의 과거사 현장 방문

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가 4·3 문제해결의 지혜를 현장에서 찾기 위해 경상남도 거창추모공원과 대전 골령골을 찾았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서 4·3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행해진 방문이다.

이번 방문에는 손유원 위원장과 김명만 부위원장, 안창남 의원, 박원철 의원, 김동욱 의원, 홍경희 의원, 강익자 의원을 비롯해 제주도 4·3지원과장, 제주4·3평화재단 관계자가 함께 나섰다.

방문단은 9월 14일과 15일, 1박 2일간 과거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현장들을 방문하고 과거사 해결 추진 실태 및 공원 조성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첫날인 14일에는 경상남도 거창추모공원과 대전 골령골을 찾아 억울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한 뒤 배·보상 관련

특별법 추진현황 및 공원조성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담당자의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15일에는 서울 서대문형무소를 찾아 제주 출신 수형인 피해 현황을 알아보고, 이어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서는 4·3 70주년 기념 4·3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배·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 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나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도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손유원 위원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현대사의 가장 아픈 역사 가운데 하나인 제주 4·3의 완전해결을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의 제주도의원은 ‘바로 우리’

도정과 교육행정질문 및 답변, 5분 자유발언 등 의정현장 체험



신광초등학교



예래초등학교



동여자중학교

오늘의 도의원은 ‘예래초등학교 학생’들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는 9월 19일 본회의장에서 예래초등학교 학생 31명이 참가한 가운데 하반기 ‘의정체험 모의의회’ 행사를 열었다.

이번 모의의회는 학생들에게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학습 기회를 주고 지방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생들이 각자 의원의 역할을 맡아서 실제와 같이 본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모의의회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개회식 후, 본회의를 열어 ‘모의의회 회기 결정의 건’과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벌였다.

이어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통한 규칙적인 체력증진 향상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비만 예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 ‘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조례안’, 그리고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등 6건의 모의 안건을 상정하여 질의·답변, 토론, 표결을 거쳐 최종의사를 결정했다. 학생들은 또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하여’와 ‘청소년 음주·흡연 문제에 대하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발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의견에 대하여도 의사 진행 과정을 통해 체험했다.

도의회 ‘의정체험 아카데미 모의의회 프로그램’은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의 진행 체험과 시설견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의정체험이 학습과 연계하여 현장 체득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미래 제주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나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9월 20일에는 제주동여자중학교 학생 32명이, 9월 21일에는 신광초등학교 학생 27명이 의정체험 모의의회에 참여해, 제주의 다양한 현안과 학생들의 의견을 토론하고 의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감시관 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위원회 개최

정책박람회 성공 개최 등 지역현안 해결방안 논의

시민감시관인 옴부즈맨들이 도의회에 모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가 운영하고 있는 제3기 의회 옴부즈맨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원배)가 9월 22일 오후 3시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옴부즈맨 본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과 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박람회 성공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3기 의회 옴부즈맨 운영위원회는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 김원배

▲ 위 원 : 강길준, 이승훈, 권혁성, 김형렬, 마리테스
갠보아가디, 박동수, 팔용와 수부하드라, 홍창부,
이봉언, 김성은, 안태수, 김양순, 안창윤, 고재영

청탁금지법 Q&A

우리 생활 속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알아봅니다.



Q: 발레리나, 축구선수 등에게도 법이 적용된다는데.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A: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 김영란법은 법 적용대상을 ‘공직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고, ‘공직자 등’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으로 규정했다. 적용대상 기관·단체 수만도 3만 9,965개에 달한다.

이들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임직원이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 들어간다. 그러다보니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예술단 등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 연극배우, 발레리나, 피아니스트 등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된다. 프로축구 선수도 FC안양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구단에 속해있다면 역시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